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7일, 강선우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 일자 :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8.19.)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9.22.)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2025.11.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선우의원)

최근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감염병 관리 및 필수의료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내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입원사망비율·뇌혈관사망비율·응급사망비율 등 각종 의료서비스 지표를 통해 드러나고 있고, 의료인력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인구 십만명당 의사수가 가장 많은 시도(서울, 328.9명)와 적은 시도(세종, 142.3명)간 차이가 약 2.3배(2024년 기준)에 이르는 등 지역간 격차

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 병·의원의 경우 특히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이른바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인력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따라서 국가가 지역 의료인력의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학 입학과정에서부터 지역에서 일정기간 복무할 것으로 예정된 의과생을 선발·교육하고 학비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의를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각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및 비수도권 지역 집중 배정을 통해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으나, 의사 수 확대만으로는 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지역 의사 제 도입 등 적극적인 의료인력 배치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반면, 10년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 이러한 의견은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이나 지역의료인프라 지원 등을 통한 취약지 지원, 공중보건·지역의료 분야에 교육 강화, 취약지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근본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편, 지역의사 양성 내용을 담고 있는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772, 이하 ‘김원이의원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0795, 이하 ‘박덕흠의원안’)과, 필수의료 육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안에 지역의사 양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2201617, 김윤의원 대표 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의를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무복무를 전제로 하는 법안 외에도 자발적 계약을 통해 지역근무를 유인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 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00694, 김미애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되어 있으므로, 지역의사제 도입 여부 및 그 방안에 대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되어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무형 지역의사”는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과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형 지역의사”를 함께 규정하면서, 지역의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